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6318
등록일자	2015.2.25.
결재일자	2015.2.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육행정팀장	여성가족과장	★복지문화국장
박정임	안창선	김선옥	02/26 代이정희
협 조	보육지원팀장 방동숙		

어린이집 영유아 **안전사고 보상체계** 마련을 위한  
**2015년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 단체가입**



서 대 문 구  
 여성가족과

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

# 어린이집 상해·배상책임 공제 단체가입

우리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보육부담 경감 및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36조,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(비용의 보조)
- 서울시 보육담당관-2580(2015.2.6) 2015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 보험 단체가입 계획

## II 추진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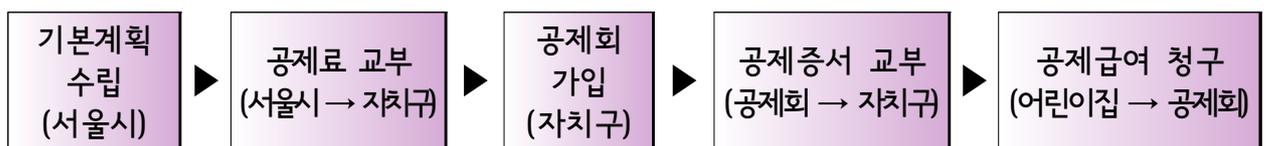
- 건 명 : 어린이집 상해 · 배상책임 공제 단체가입
- 납입금액 : 33,786,000원(전액 시비)
- 가입방법 : 자치구별 공제 단체계약
- 보장내용 : 영유아 상해 및 배상, 돌연사증후군 특약
- 보장기간 : 2015. 3. 1 ~ 2016. 2. 29
- 보 험 사 : 어린이집 안전공제회

### III 가입 현황

구 분	'07년 이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
가 입	어린이집 개별가입	서울시 단체가입						
공제 료 부담	배상	어린이집	서울시					
	상해	학 부모						
보 험 사	어린이집 선정	지방재정공제회		어린이집안전공제회				
보장내용	어린이집별 상이	사 망 2억원 치료비 5백만원	사 망 4억원 치료비 5백만원	사 망 4억원 치료비 100%			사망4억원 치료비100% 돌연사특약	

### IV 세부 계획

- 가입방법 : 서대문구에서 직접 단체가입 계약
- 가입대상 : 서대문구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 
※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
- 보장기간 : 2015. 3. 1 ~ 2016. 2. 29
- 보 험 사 : 어린이집 안전공제회(영유아보육법 제31조2에 의거 설립)
  -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
- 가입절차



○ **보장내용 : 영유아 상해 및 배상, 돌연사증후군 특약**

**< 상해담보 >**

- 공제증권(가입증서)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중인 영유아
-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% 해당액(365일 한도)

**< 배상책임 >**

-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,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및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
- 대인배상 1인당 4억원(사고당 20억원),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
-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및 음식물 배상책임(위탁급식 제외) 포함
- 형사소송지원금(300만원 한도)
- ※ 자기부담금 대인·대물 각 10만원 부담

**< 돌연사증후군 특약 >**

-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배상 및 상해보장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천만원 보장

○ **공 제 료 : 33,786,000원(전액 시비)**

(단위 : 명,천원)

구 분	영유아(방과후)생명 및 신체피해		돌 연 사(B)	합 계 (A+B)
	인 원	공제료(A)		
영유아 아동	6,486	31,716	749	33,786
방과후 아동	331	1,320		

※ 공제료 백원단위 절사

- **예산과목** : 여성가족과,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보육의 공공성 제고, 어린이집 상해배상책임 공제 단체가입, 민간이전,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

## V

## 행 정 사 항

- **어린이집에 단체가입 안내**(특히,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)
- **2015년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**
  - 일부 어린이집에서 입학비용으로 상해보험료를 받고 있는 사례 발생
- **가스사고배상책임·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**
- **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어린이집별 자체가입(보험료는 시설부담)**
- **공제사고 발생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. 끝.**